제21장

예외

제21.1조

일반적 예외

- 1. 제2장(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),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, 제4장(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), 제5장(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) 및 제6장(무역에 대한 기술장벽)의 목적상,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.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.
- 2. 제8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, 제9장(기업인의 일시 입국), 제11장(통신) 및 제12 장(디지털 무역)¹의 목적상, GATS 제14조(각주를 포함한다)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.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.

제21.2조

¹ 이 항은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.

필수적 안보

- 1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 - 가.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
 - 나.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 - 1) 무기,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, 또는 군사 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
 - 2)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 된 조치, 또는
 - 3)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, 그리고
 - 다.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의 목적상, 자국의 국제적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
- 1.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.
- 2. 가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²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, 그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.
 - 나.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,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.
- 3. 제2항에도 불구하고
 - 가. 제2.2조(내국민 대우)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 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범 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그리고
 - 나. 제2.12조(수출 관세,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)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- 4. 제2항을 조건으로

-

 $^{^2}$ 조세협약이란 양 당사국 간 발효 중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.

- 가. 제8.2조(내국민 대우) 및 제10.2조(내국민 대우)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,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다만,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 지하지 않는다. 그리고
- 나. 제8.2조(내국민 대우) 및 제8.3조(최혜국 대우) 그리고 제10.2조(내국민 대우) 및 제10.3조(최혜국 대우)는 소득,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나 상속, 유산취득, 증여 그리고 세대를건너뛴 이전에 대한 세금 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
다만, 가호 및 나호에 언급된 조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.

- 다.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의무
- 라. 기존의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
- 마. 기존의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
- 바. 기존의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위의 어떠한 조들에 대해서도 그 개정 시점에서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그 개정
- 사. (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) 공정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

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 행, 또는

- 아.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 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
- 5. 이 조의 목적상, "세금" 및 "과세조치"는 제1.4조(정의)에 정의된 관세와 그 안에 기재된 예외(가호는 제외한다)를 포함하지 않는다.

제21.4조

정보의 공개

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 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
제21.5조

비밀유지

한쪽 당사국이 자국이 비밀로 지정한 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언제나, 그러한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.

제21.6조

국제수지

- 1.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하여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,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, 양 당사국 간 지급 및 자본 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, 그 당사국은
 - 가. 상품 무역의 경우, 1994년도 GATT 및 세계무역기구의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. 그리고
 - 나.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경우, GATS 제12조와 제8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의 부속서 8-가에 따라³, 지급 또는 송금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.
- 2.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조치는 비차별적이고 그 기간이 제한되며, 국제수지 상황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고,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수립된 조건을 따르며 적용가능한 대로 국제통화기금협정과 이 협정의 조항 및 부속서와 합치한다.
- 3.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, 그러한 당사국은 그러한 조

³ GATS 제12조와 제8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의 부속서 8-가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, 그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제8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의 부속서 8-가가 우선한다.

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하고, 그것의 제거를 위한 시간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시한다.

4. 제1항에 따라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에 관하여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한다.